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·공용물건손상

[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. 7. 6. 2007고합13]



【판시사항】

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반대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,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,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려는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은 사안에서, 위 경찰관들의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반대 집회에 대하여 집단적 폭력이 발생할 우려 와 교통소통문제 등을 이유로 그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위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,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, 위 서울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센타 앞에서 차량에 올라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하고 위 자치센터 정문 앞에 순찰차등을 세워 농민들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출입로를 봉쇄하자 위 농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순찰차의 유리창을 부순 사안에서, 위 농민들의 상경행위는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를 저지하기위한 경찰관들의 출입로 봉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형법 제136조, 제144조 제2항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덕진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

【주문】

피고인 1을 벌금 1,000,000원에, 피고인 2를 벌금 3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

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피고인 2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.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